

#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 절차 불편 해소

 추진부서 | 경기도 화성시 도시정책과 ☎ 031-5189-6192

## 개선배경



-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제로 관리받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저온저장고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음.
-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시설인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건축사를 통한 설계의뢰 및 신청 등으로 농업인에게 커다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었음.
- 또한, 관내 농업지원 부서에서 영농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위 규제때문에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개선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제7호의2 신설을 통해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신고처리 근거 마련

### 개선 전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허가 필요  
**(신청절차)** 건축사를 통한 설계의뢰 및 신청 (허가절차 진행)  
**(처리기간)** 약 1개월 소요  
**(처리비용)** 약 300만원 (건축사 설계의뢰 비용 + 공과금 등)



### 개선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절차를 통해 저온저장고 설치 가능  
**(신청절차)** 건축사 설계의뢰 없이 농업인이 직접 신청 가능 (신고절차 진행)  
**(처리기간)** 약 7일 소요  
**(처리비용)** 약 1만원 (공과금)

〈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 사진 〉



추진과정



- '21.10. 경기도, 국토교통부 워크숍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필요성 발표
- '21.11. 규제개혁신문고(국무조정실)를 통해 규제완화 건의서 제출
- '22.5.2. 규제완화 건의 국토교통부 답변 회신(건의 수용)
- '23.2.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저온저장고 설치 관련 규정을 신고의 대상에 신설(영 제19조)

개선효과



-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민생불편 대폭 해소
-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의 편의증진 및 생산성 향상
- 자치법규가 아닌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합리화 효과 전국적 확산



## 개발제한구역 규제합리화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준다.



경기도 화성시 前 도시정책과 김규동 ☎ 031-5189-6192

화성시 도시정책과에서는 매월 팀 스터디를 개최하여 법령 및 질의회신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팀 스터디 연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실외 저온저장고 규정이 없어 설치가 곤란한 점이 불합리한 규제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 현장확인 및 민원인 면담을 통해 영농편의시설인 실외저장고 설치에 대한 법령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규제합리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토교통부 워크숍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필요성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규제개혁신문고(국무조정실)를 통해 규제완화 건의서 제출하는 등 노력한 결과 '22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의 수용이라는 답변을 얻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23년 2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법령 개정 후 실외 저온저장고 규정이 신고의 대상에 신설되어, 개정 전 보다 절차적, 비용적, 시간적으로 크게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향후 영농 편의시설인 실외 저온저장고 설치가 늘어나 영농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치법규가 아닌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이러한 기대효과가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영농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연구하는 자세로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